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조(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